

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

2013. 4. 8. 제정

2020. 12. 10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세포항상성 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센터는 세포항상성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세포항상성에 관한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2. 생명과학전공 학부과정과 연계하여 세포항상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
3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4. 세포항상성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엄 개최
5. 학계, 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6. 세포항상성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
7. 대학생, 교수,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세포항상성 관련 교육
8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)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센터에 연구부, 교육연구지원부를 둔다.

②연구부는 세포사멸 조절, 오토파지 조절, 염증반응 조절에 의한 세포항상성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

③교육연구지원부는 인력 양성, 대외협력 및 홍보, 기술 지원,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부장) ①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12.10.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연구교수) 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실무위원회) ①센터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,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④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자문위원회) ①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 (평가위원회) ①센터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, 중요사업성과의 분석, 운영 및 회

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장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4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5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제 16 조 (존속기간) ①센터는 제2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17 조 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3. 4. 8. 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